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5.10.14.(수) 10:00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3. 제안 이유

○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수면 연구소 시험 수수료 불반환 조항 개정 및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내수면연구소 시험수수료 불반환 조항 개정(안 제4조 제6항)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'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 수수료 불반환 조항을 개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